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기본법」(법률 제7669호, 제정2005.8.4.)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18호, 제정 2006.2.6.)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

나. 종합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의 2)
-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자 중에서 선임하여,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함(법인 및 위탁운영 사항임)

다.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센터를 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다만 효율적인 운영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새로이 정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5조(발췌 별첨)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성주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과 운영)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1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 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사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종합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5조(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①군수는 종합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